

동두천시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 안	5-141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“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” 을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” 으로 함.(안 제1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동두천시의회에서 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 36조제4항</u> 및 <u>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(이하 “증인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4 1 조 제 4 항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생략

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내지 ⑦ 생략